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39호, 2024. 2. 20. 공포, 2025. 2. 21. 시행)됨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거부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및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봉인을 폐기하지 않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
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아목 중 “발급 또는 봉인”을 “발급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6호
라목 16) 마) 중 “자동차등록증·등록번호판 및 봉인”을 “자동차등록증
및 등록번호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